



대한테니스협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KTA 제품인증제도 인증 절차 안내 (경기시설용품)

1. 우리 협회는 「경기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 21.제품인증」에 의거하여, 경기시설 용품에 대한 인증제도 절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위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건 명: 제품인증제도 인증 절차 (경기시설용품)

나. 절차안내

구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공인검정위원회	-	②서류심사	③서류보완요청	-	④인증심사
대한테니스협회	①신청접수	②서류심사		-	⑤인증서발급
기타사항	성적서 발급 이후 공인검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진행				

다. 진행시기

- ①서류접수: 연중 상시 접수하나, 재인증 제품은 ~8월14일까지
- ②~③서류심사 및 보완요청 : 연중 상시 접수하나, 재인증 제품은 ~ 8월20일까지
- ④인증심사 진행 : 재인증 심사는 8월 개최되는 공인검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
 - ㉠ 8월 개최 전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은 일시적으로 인증기간을 유예한다.
 - ㉡ 단, 재인증에 대한 제품인증료를 납부한 신청업체에 한함
예) A제품 인증기간 (2017.8.1.~2019.7.31. → 2017.8.1.~ 19.10월까지)
- ⑤ 증서 발급: 공인검정위원회 심의·의결 완료일부터 2년간
 - ㉠ 단, 재인증 제품 인증 유효기간은 기존 만료기간 이후로 발급
예) A제품 인증기간 (2017.8.1.~2019.7.31. → 2019.7.30.~ 2021.7.29)

라.제출서류: [붙임1] 제품인증신청서 ver3, 그 외 첨부서류

마.문의사항: 공인검정사업 담당자 신지희 대리 (02-420-4285, 내선1번)

붙임. 경기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 1부.
제품인증신청서(ver3) 1부.
제품인증 시행제도 안내문 1부. 끝.

★대리

신지희

차장

김은영

사무처장

노영수

회장

08/05

곽용운

협조자

시행 대한테니스협회-3071 (2019.08.05.) 접수 ()

우 411-7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륜동 88번지 / <http://www.sports.or.kr>

전화 02) /전송 02) / @sports.or.kr / 공개